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경상북도지사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②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단체 사무소가 없으며, 단체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경산시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0번지 경산실내체육관 1층	김준목	2000/05/26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⑥ 청문실시

- 일시: 2023. 8. 17.(목) 14:00 ~ 15:00
- 장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주민복지관 407호)
- 기관명: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 담당자: 우 민 (054-880-2904, yna070200@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윤난숙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